

◎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014. 1. 20.
개정 2014. 8. 7.
개정 2017. 12. 20.
개정 2021. 2. 25.
전부개정 2022. 8. 17.
개정 2023. 2. 17.
개정 2023. 12. 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에 의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실업팀(이하 “실업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단”이란 실업팀에 두는 각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제9조의3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실업팀에 두는 각 선수단 감독, 코치, 트레이너를 말한다.

제 2 장 설치 및 구성

제 3 조(설치) ① 팀의 명칭은 종목을 삽입하여 “경상북도장애인○○실업팀”이라 칭한다.

② 팀의 명칭 및 선수단 정원은 팀별 경기력 상황과 예산범위 내에서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감독 외 코치,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③ 각 팀별 인원은 우수선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증원 및 해체할 수 있다.

제 4 조(구성) ① 실업팀은 단장, 부단장, 주무,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와 선수로 구성하며, 단장은 본회 사무처장, 부단장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단장, 부단장, 주무,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 장 : 실업팀의 훈련, 출전 등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고, 실업팀 운영 감독(단장 유고시 업무대리)
3. 주 무 : 실업팀 실무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4. 감 독 : 실업팀 운영의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방안 수립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나.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다.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 라. 선수관리 및 상황보고 등
- 5.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및 훈련지도 등
- 6. 선수 :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등

제 3 장 실업팀 운영위원회

제 5 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규약 제31조에 의거 설치하는 실업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의 직책을 가진 자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체육분야 관련 전문가 중 회장이 지명한 외부인사 위촉직 5인 이내
2.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3.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팀장

②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및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업팀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제 7 조(임원의 임기) ①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본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 8 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사항(지도자, 선수 선발 및 해임)
2. 국내 및 국제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9 조(회의 소집 및 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본회가 요청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② 심의안건 결과는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자격과 임명

제12조(선수단 자격 요건 및 선발) ① 지도자 및 선수는 실업팀운영위원회에서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1.>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의 자격으로 선발되더라도 2년 이내, 기존의 지도자의 경우 1년 이내 제9조의 3(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1.>

제13조(계약기간) 선수단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중 신규임용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 내 각종 경기대회 입상성적, 평소 훈련태도, 제19조의 면직 및 징계사유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17.>

제14조(등급부여 및 평가) ① 지도자 및 선수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책정은 1년 단위로 1년간 입상 실적 등을 포함하여 실업팀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1.>

② 평가는 당해연도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성적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단, 신규선수의 경우 평가와 관계없이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채용기간 중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제15조(구비서류) 지도자 및 선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 및 추천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병력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7. 채용신체검사서(‘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1부
8. 사진 2매(3×4cm)
9. 스포츠지도사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부
10. 직무수행계획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12. 지도경력 및 선수경력 확인서 1부
13. 국가대표 선수 경력 확인서 1부
14. 신원진술서 1부
15.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중앙경기단체발행) 1부

제 5 장 복 무

제16조(복무시간) 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② 지도자의 요청이 있을 시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과 평시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겸직금지) 선수단은 복무 기간동안 훈련에 전념해야 하며 어떠한 사유에 불구하고 다른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 및 훈련을 위해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제18조(이적) ① 선발된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타 팀으로 이적을 원할 때에는 해당 연봉의 1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2개월 전에 본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 이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중앙경기단체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9조(면직 및 징계) ① 실업팀에 소속된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 <개정 2023. 12. 21.>
3.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실적이 2년간 연속 부진하여 선수 및 경기지도자로서 기량향상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3. 2. 17.>
5.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6. 질병 또는 부상으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선수생활 불가 판단 시)
7. 예산감축 또는 내부방침에 의거 팀 해체가 필요할때
8. 그 밖에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휴무) 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도자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 직원복무 규정에 준하여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감독의 건의 및 단장의 재량으로 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조사의 경우 본회 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1.>

제 6 장 보수 및 지원

제21조(보수구분) ① 선수단의 급여는 연봉제로 운영하며, 연봉액의 1/12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기타 각종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팀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 2. 17.>

제22조(연봉계약) ① 선수단의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연봉은 실적, 종목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연봉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3조(격려금) 실업팀 선수단의 훈련 및 국내·외 대회 참가시 선수단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상금) 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기 부여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목의 특성과 대회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대회종료 후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매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④ 지도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독은 종목의 최고성적 수혜자 금액의 70%를 적용하고 코치 및 트레이너는 50%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1.>

제25조(의료보상) ① 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지정 병원을 지정하여 치료 및 재활하게 하고 부상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의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도자 및 선수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숙소지원)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참여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 주택(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소 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제27조(선수등록비) 중앙경기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각종 보험 가입) ① 근로계약에 따른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의무 가입한다.

제 7 장 퇴 직 금

제29조(퇴직금 지급 대상) 본회 실업팀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30조(퇴직금 예정기준) ① 퇴직금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한다.

② 퇴직금 지급률은 연간임금총액 × 1/12(월 8.3% 이상)으로 산출하여 개인별 퇴직급여계좌로 입금한다.

제31조(퇴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자는 퇴직금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해당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8 장 훈 련 및 대 회 참 가

제32조(선수단 훈련)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고 선수들의 개인별 훈련 상황과 경기력 향상에 제반되는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 ② 매월 훈련계획서는 전월 25일까지, 전지훈련 및 합숙훈련은 2주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 ③ 훈련은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훈련평가 보고서는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 ④ 전지, 합숙훈련은 지도자가 훈련일정, 시기, 장소를 정한다.
- ⑤ 선수가 연고지를 달리하여 개별 훈련을 할 경우, 해당기간 훈련계획 및 훈련 상황을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 ⑥ 선수단이 각종 대회와 국가대표 파견 및 강화훈련 등에 참가할 때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1.>

제33조(대회참가) ① 실업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규모 대회 이상의 경기에 반드시 출전하여야 하고, 지도자는 대회참가 1주 전에 참가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참가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대회종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연습장 사용료) 선수단의 훈련성과 제고와 경기적응 훈련 등을 위해 유료 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습장(체력단련장 포함) 등을 포함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선수단이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장비 등 구입) 선수의 훈련 및 대회참가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는 종목별 특성에 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장비 구입시 장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장 후 원 및 흥 보

제37조(후원) ① 실업팀은 후원 업체를 확보할 경우 후원금품, 적용범위, 후원계약서 등 전반에 대해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후원을 받는 경우 해당 종목 선수단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수 개인에 대한 후원은 금지한다.

제38조(홍보) ① 후원업체의 로고를 경기복 등에 부착할 수 있으나 본회 로고가 주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팀명 변경은 불가하다.

② 선수단은 단장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및 선전, 방송출연 등 일체의 영리활동

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없다.

부 칙(2022. 8.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2.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12. 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23. 12. 21.>

지도자 및 선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지도자 (감독, 코치, 트레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 또는 제9조의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의 자격으로 선발한 경우 2년 이내, 기존 지도자의 경우 1년 이내 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어 전문가(가맹경기단체장) 등이 추천한 자 ○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자
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 입상자 ○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를 전문가(가맹경기단체장 등) 및 종목별 감독이 추천한 자 ○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자

[별표 2]

연봉기준액

구 분	등 급	연봉(천원)
지도자 (감독, 코치, 트레이너)	A	42,000 이하
	B	39,000 이하
	C	36,000 이하
선 수	A	39,000 이하
	B	33,000 이하
	C	27,000 이하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대회횟수	지급기준	포상금액 산정		
		1위	2위	3위
전국규모 2개 대회	전국 규모대회 3위 이상 입상	300천원	200천원	100천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위 이상 입상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상규정 적용		
국제대회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	국제대회 포상금 지급규정 적용		